#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115

발의연월일: 2024. 12. 30.

발 의 자:윤준병·소병훈·민홍철

황명선 • 정동영 • 안호영

박민규 • 민형배 • 허종식

박희승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예·적금 수취 및 대출 등의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는 가운데,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신용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 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금융감독을 받고 있음.

그런데,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과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새마을 금고의 재정건전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실제 지난 8월 금융 감독원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올 상반기 1조 2,01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전년 동기(-1,236억원) 대비 적자 폭이 열 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남. 또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1조 4,000억원 규모의 대 손충당금을 신규로 적립했고, 연체율 역시 작년 말 5.07%에서 올해 6월 말 7.24%로 2.17%포인트 높아지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새마을금고의 각종 비리와 금융사고까지 불거지고

있어 관리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금고의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새마을금 고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경영건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 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및 제74조).

#### 법률 제 호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2조의2(회계) ① 금고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② 금고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각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회계 간에 전출입할 수 있다.
  - ③ 금고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계정과목 및 장부의 서식 등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금고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 제32조의3(금고의 결산) ① 금고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이영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금고의 결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계정과목 및 장부의 서식 등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금고는 제1항의 결산보고서를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4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그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⑨ 금융위원회는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제8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 및 금고의 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계 및 결산한 것은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32조의2(회계) ① 금고의 회계
	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
	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u>정관으로 정한다.</u>
	② 금고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각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회
	계 간에 전출입할 수 있다.
	③ 금고의 회계처리기준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
	회가 정한다. 다만, 계정과목
	및 장부의 서식 등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금고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u>정한다.</u>
<u>&lt;신 설&gt;</u>	제32조의3(금고의 결산) ① 금고
	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
	을 끝내고 결산보고서(사업보
	고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와 이영금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

제74조(감독 등) ① ~ ⑦ (생략) <신 설>

<신 설>

역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고의 결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계정과목 및 장부의서식 등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금고는 제1항의 결산보고서 를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제74조(감독 등) ① ~ ⑦ (현행 과 같음)

⑧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5 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의 신용 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 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그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금고 또는 중 앙회의 임직원이 제8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부장관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요 청할 수 있다.